

제 7 장

지적재산권
보호

REGISTER

LAW

PROPERTY

COPYRIGHT

IDEA

LICENSE

PATENT



1. 지적재산권 보호

- 1.1 특허
- 1.2 등록 상표
- 1.3 산업 디자인
- 1.4 저작권
- 1.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 1.6 지리적 표시
- 1.7 지적재산권(IP) 가치 평가
- 1.8 지적재산권(IP) 금융
- 1.9 지적재산권 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MDTCA) 산하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My-IPO)에 의해 관리됩니다.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위치 표시 그리고 집적 회로의 배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의 서명국입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원을 받아 체결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서명국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및 외국 투자자를 모두 적절히 보호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법령들은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TRIPs 이사회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1.1 특허

말레이시아의 특허권은 1983년의 특허법과 1986년의 특허 규정에 따라 통제 받습니다.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특허 신청은 신청자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비슷하게 발명이 새롭고, 발명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 보호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거하여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 간 보호를 받으며 또한 사용 여부에 따라 1회에 5년씩 2회에 걸쳐 추가로 연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허가 받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강제 실시권과 병행수입 같은 특허에 대한 예외도 포함됩니다.

1.2 등록상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의 등록상표법(Trade Marks Act)과 1997년의 등록상표규정(Trade Marks Regulations)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등록상표법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 상표를 보호합니다.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거래 또는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등록상표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자는 등록 상표 대리인(trade mark agents)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1.3 산업 디자인

말레이시아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1996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과 1999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의 통제를 받습니다. 산업디자인법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법률의 작용에 의해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산업디자인은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단지 기능에 의해서만 지정된 구성 방법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의 디자인은 반드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형상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내국인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디자인 출원자는 반드시 등록된 산업디자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1차적으로 5년 간 보호를 받으며, 이는 5년씩 4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25년 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6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 1996)을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 세계적인 신규성이 포함되고, 보호 기간이 연장되며, IP 저널 시스템과 산업디자인의 화폐화 및 증권화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1.4 저작권

1987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성격, 보호의 범위 및 보호 방법을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격 있는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작물에 유효합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입니다.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기간은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 간입니다.

또한 동법은 공연자의 실연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하거나 녹음한 해 그 다음 연년 초부터 기산하여 50년 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독특한 특징은 강제 집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10월 1일 시행된 1987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개정안은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DT-CA,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소속 집행 공무원들에게 체포 권한(영장 없는 체포 포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DTA)의 공무원 특별팀은 이 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지명되며 또한 저작권 침해 의혹이 있는 건물 구내에 들어가 침해 복제물과 복제장치를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012년의 저작권(개정)법은 2012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제 IP 협약/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는 저작권의 자발적 통지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의 집중 관리 단체(CMO)의 규율,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의 기능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저작권자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MyIPO)에 자발적 통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CMO를 MyIPO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2000년의 집적회로배치설계법(Layout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ct 2000)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한 집적회로 배치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적회로 배치 설계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 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간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 간입니다. 동법은 또한 동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치 설계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에 의해 또는 법 집행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동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의 투자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6 지리적 표시

2000년의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은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생산지의 명칭을 딴 상품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천연 또는 농업 제품 또는 수공업품 또는 공산품과 같은 상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 신청자는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청자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청(MyIPO)은 또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온라인 검색 및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통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myipo.gov.m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지적재산권(IP)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 모델(IP Valuation Model)과 함께, 지적재산권 평가 훈련 프로그램이 스위스 베른대학교(University of Berne) 세계무역연구소(WTI)의 협력으로 만들어졌고, 2013년 3월 7일자로 개척자단 훈련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국내 IP 가치 평가사는 금융 및 대출 목적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외국 IP 가치 평가를 지명하는 비용과 복잡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중소기업(SME)과 IP 소유자가 자체의 IP를 평가 받는 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차례로 생태계의 전반적인 활력에 기여합니다.

1.8 IP 금융

국내 중소기업(SME)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 전략의 일환으로 MyIPO(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는 중소기업(SME)의 대출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담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SME) 지적재산권(IP)에 기초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및 대출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여러 결정권자와 주요 플레이어, 특히 대출자와 금융 기관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1.9 지적재산권 시장

IP(지적재산권)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전반적인 추진력의 일환으로 IP의 건강한 수요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IP 창출과 기타 형태의 노하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MyIPO(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는 자신의 권리를 허가 내주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IP 소유자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P 시장이라고 불리는 파일럿 플랫폼을 개발하여 출범했습니다. 이 포털은 IP 소유자가 자신의 IP를 알리고 잠재적 허가 임대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MyIPO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IP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및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IP 시장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보다 적절한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향후 이 네트워크에 추가될 것입니다.

IP 시장과 참여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www.iprmarketplace.com.my를 방문하십시오.